

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순규 의원

안녕하십니까?

중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순규 의원입니다.

오늘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일부개정안에 대해 직접 참석하여 설명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.

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
「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산학연 협력지원시설(DMC산학협력연구센터)의 규모는 연면적 29,760m²로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

특별법」(이하 ‘「시설물안전법」’)제1종, 제2종, 제3종 시설물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.

「시설물안전법」1~3종에 해당되는 시설물은 법령에 의해 안전하지 않는 경우 시설물의 사용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해당되지 않는 시설물은 사용중지 등의 관련 근거가 부족한 여건입니다.

조례를 근거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노후 또는 파손으로 인하여 시설물 이용 시 시민과 사용자에게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을 때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입니다.

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! 그리고 기획경제 위원님 여러분!

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